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 2019년 3월 22일 -

- 대표 집필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문의 : 유명재 연구위원(02-711-7292, 010-3297-0568)
- 메일 : spark946@hanmail.net

[개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입니다. 국회는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합니다.

- 이번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평화정세를 역행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였고, 위헌적인 연장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지속적 증액의 길도 터주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임.
-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까지 위협해 한국정부를 굴복시킨 트럼프 정권의 강압 때문임.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마저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굴종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임.
-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함.
-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내야 함.

* **방위비분담금이란?**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게 떠넘긴 불법부당한 분담금입니다.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10가지 이유

1. 방위비분담금 8.2% 증액은 합당한 근거 없어!
2. '연장조항(7조)'이 담긴 10차 협정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침해!
3. 공공요금 지원과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 처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굴욕!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군 쓰레기장?
4.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길을 틈 이행약정은 한미소파 위반! 10차 특별협정 위반!
5. 사드운영비 부담의 길을 연 10차 협정은 불법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
6. 불법적인 이자소득의 방위비분담 총액 반영 약속 저버린 정부
7.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묵살
8.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확약 없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가능성만 열어
9. 1조 원 넘게 남아도는데 대폭 증액! 수많은 삭감요인도 무시돼
10. 불평등한 주한미군경비 분담구조-한국의 직간접 지원 6.4조 원, 미국의 주한미군 경비부담은 겨우 1.1조 원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우리나라의 자주와 평화군축 및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평통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평등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방위비분담(주한미군 경비 분담)이 갖는 우리 국민부담의 과도성과 불평등성, 불법성 등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비준동의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10차 협정은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유례없이 높은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위험적인 연장조항, 공공요금 및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항목 신설, 수많은 삭감 요인의 무시 등 많은 점에서 굴욕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회가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10차 협정의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평화적인 정세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 증가율을 허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종적 자세 때문입니다

<표1> 역대 정부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및 증가액 비교

정부	노무현		이명박 (2009, 8차)	박근혜 (2014, 9차)	문재인 (2019, 10차)
	2005(6차)	2007(7차)			
증가율 (%)	-8.9	6.6	2.5	5.8	8.2
증가액(억 원)	-1561	451	185	505	787
주한미군수(명)	29500	28356	26606	29074	25877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유리한 상황에

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0차 협정의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8.2%(증가액 787억 원)는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의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명박 정부 하의 8차 협정의 증가율과 증가액은 2.5% 및 185억 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하의 9차 협정의 증가율과 증가액은 5.8% 및 505억 원으로 두 경우 모두 이번 10차 협정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통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가 등을 동원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수세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2018년 12월 26일 청와대를 방문해 '방위비분담금 최소 10억 달러와 1년 유효기간'이 최종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미국의 불법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1.5~2배 증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에 눌린 나머지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명확한 협상 목표로 하지 못하고 '증가율을 최소화한다'거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공표했던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강한 대북 제재를 의식하여 이를 돌파하려고 하기 보다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미국의 승낙을 얻어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굴종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대북 인도적인 지원사업마저도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대미 저자세와 이를 이용한 트럼프 정부의 초압박공세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최악의 협정으로 만든 요인입니다.

2. 10차 협정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합니다

(1) 방위비분담 증가율이 빠진 연장조항

10차 협정은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는 이른바 연장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보도자료 2019. 2. 10)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외교부의 보도자료 대로라면 한미가 제7조에 따라 연장하기로 합의할 경우 방위비분담 금액(1조389억 원)도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차 협정 가서명에 대한 외교부의 백브리핑(2019. 2. 10)을 보면 10차 협정의 연장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그건(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은) 추후 양측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방위비분담 금액(1조389억 원)의 경우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 즉, 별도 (한미)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2) 국회의 비준동의권 침해하는 연장조항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은 연장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인 바, 국회가 연장조항의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 기준이자 근거입니다. 하지만 연장조항(10차 협정 제7조)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빠져있어 국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규정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입니다. 조약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유효합니다. 이 점에서 연장조항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고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10차 협정은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방위비분담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연장조항은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의 길을 열어 주려는 것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한미 당국이 연장조항을 10차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을 때는 연장되는 내용 특히 방위비분담금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가 차기(11차) 협정 미타결 시 10차 협정의 연장예에 대해 문자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없이 갈 수도 없고 제가 대표라고 하면 증가율 없다고 할 거고요. 미측은 증가율 적용해야 한다고 하겠죠”(10차 협정 가서명에 대한 외교부의 백브리핑, 2019. 2. 10)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방위비분담금액이 연장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한 이유가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증가율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위비분담금액을 연장 대상으로 하지 않은 미국의 의도는 ‘주한미군 주둔경비+50%’를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 기준으로 정했다는 3월 8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도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 차기(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2~3배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10차 협정문에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근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등 새로운 항목 신설, 인건비 상한선 철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 지급대상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미국에게 차기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굴욕적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시설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굴욕적 내용입니다

(1) 공공요금 등 시설은 굴욕적입니다

10차 협정에는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시설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 및 저장이 군수지원비(기지운영지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비용을 미군 주둔국이 대신 지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 미군의 공공요금을 주둔국이 대신 지불하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공공요금과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항목 시설은 우리의 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2) 공공요금 등 시설은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합니다

또 공공요금은 그 자체로 액수가 군수지원비 전체 액수(2018년 162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큼니다. 주한미군이 한 해 쓰는 전기료만 751억 원(2015년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 23,953Kwh×28,500명×110.08원)에 달합니다.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평통사)이 2019년 2월 14일 외교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요금이 총액기준으로 얼마나 배정되는가?”라고 묻자 당국자는 “굉장히 (공공요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 면제(전액 방위비분담금 지급)는 될 수 없다고 들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의 대답은 공공요금 자체가 너무나 커서 모두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공요금 시설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증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신설한 이번 10차 협정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훈련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에게까지 방위비 분담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배입니다

① 해외주둔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지급대상을 넓힌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배입니다.

공공요금과 폐기물처리 등의 항목 신설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 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 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 제5절(군수비용 분담)의 2항은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주둔’이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나 미 전략자산 전개를 위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당장 제주 강정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주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조)에서 언급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파견되어 한미소파에 의거하여 한국 영역 내 시설과 구역을 공여 받아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미국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행약정 제5절 2항의 ‘일시적 주둔’이란 표현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을 지원하는 길을 트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2013년) 미국은 B2, B52, 핵잠수함 등 한반도 투입에 따른 비용 증대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항공모함이나 군사훈련 등은 **주둔비용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그 한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거부한 것 또한 한미연합훈련 등에 참가하는 해외주둔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한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일시적 주둔’에 대해서까지 군수지원비 지원의 길을 터준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주둔미군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② 본협정을 위반한 이행약정은 원천적으로 불법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이행약정은 또 해외주둔미군에게까지 우리의 재정적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기 때문에 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행약정 자체가 조약체결권이 없는 기관 대표가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위헌입니다.

4. 이자소득을 차기 협상 때 방위비분담 총액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에서 2002~2008년 사이 불법 축적한 현금이 1조1193억 원이고 이를 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 최소 30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당시 조태용 외무차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인 2014년 4월 15일 “만약 CB(커뮤니티 은행)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 조치를 엄

정하게 취해 나갈 것이며, CB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2015년 9월 CB가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임을 확인하는 편지를 한국정부에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차 협정에서는 최소 3000억 원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이 2018년보다 무려 8.2%가 오른 것이어서 총액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대국회 및 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5. 사드운영비 부담의 길을 연 10차 협정은 불법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입니다.

10차 협정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으로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를 지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또 200여명의 주둔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료, 상·하수도요금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육군이 발행한 광환경평가서(Enviornment Assessment, 2015년도, 2-5쪽)를 보면 사드모터 풀 시설은 분기마다 1703리터의 폐유, 2080리터의 혼합고체 쓰레기 및 189리터의 오염된 냉각수 등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드물기는 하지만 사드 장비유지 운영 과정에서 1514리터의 오염된 냉각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평통사와의 전화통화(2019. 2. 14.)에서 사드운영유지비를 군수 지원비에서 쓸 가능성에 대해 문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면서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전기세나 유류비 등도 운영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부담”(SBS, 2017. 5. 4.)한다고

밝힌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장비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민 앞에 밝힌 정부가 10차 협정을 통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에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외교당국자의 발언처럼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의 사드운영비 사용을 묵인하거나 양해한다면 이는 대국민 약속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배치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장비의 경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적용할 국제법적인 근거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사드운영유지비 전용에 대해서 양해하거나 묵인하면 이는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6.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1) 불용액에 대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무시되었습니다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국방위 전체회의, 2017. 8. 23.)하였습니다. 이런 국회의 요구는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고로 회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의 재정에서 나가는만큼 불용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국고로 회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시설정비비(한국의 군사건설비와 비슷한 개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국고로 회수합니다.

대부분 불용액은 군사건설비에서 입찰차액 형태로 발생합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203억 원이고 이중 179억 원이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10

차 협정의 이행약정(제4절 4항 가)을 보면 “모든 입찰 차액은 향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되어있어 군사건설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어도 여전히 미국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군수지원비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제5절 7항)을 보면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군수비용 분담 잔여 재원은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공요금에 지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지원비에서 불용액이 생길 경우 이 금액을 공공요금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우리 국고로 회수되지 않고 다시 미국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미국이 다시 사용하도록 허용한 10차 협정은 불용액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국고로 회수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결과로서(즉 입찰차액이나 사후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2009년 이전에는 불용액이 생기면 국고로 회수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불용액을 다시 미국에게 사용토록 한 것은 우리의 재정주권에 대한 훼손이며 제도 개악입니다.

(2) ‘예외적 현금지원’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이면합의(9차 협정 이행약정에 포함됨)로 문제가 되었던 ‘예외적 현금지원’(설계감리비 12% 외에 추가 현금지원)을 10차 협정에서는 삭제하였고 이는 이자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장은 사실상 허위입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 제4절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설감리비(군사건설비의 12%) 외에는 현금이 미국에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건설 시공은 한국기업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행약정 ‘제4절 4항 다’를 보면 “특정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

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특정 정보시설(SCIP)의 경우에는 미국기업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미국에 설계감리비 외에 추가로 현금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특정정보시설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지원은 10차 협정에서도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이에 ‘예외적 현금지원’이 10차 협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정부는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나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 축소’를 통해서 “그간 문제되어 온 현금 미집행금 축적에 따른 이자소득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외교부 백 브리핑, 2019. 2. 10)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말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 2880억 원과 연 3회 나눠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없습니다.

(3) 군사건설사업은 한국이 선정하고 시공 및 설계감리도 한국이 해야 합니다

10차 협정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리(한국)측의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미측이 5개년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우리측 참여(률) 강화”(외교부 보도자료, 2019. 2. 10.)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의 사업목록 조정과 추가 사업 제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고 그 결정은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추가사업을 제안하면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건설사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이거나 낭비적인 집행관행 즉 미군기지이전비로의 군사건설비의 불법 전용, 현금의 축적, 이자놀이, 탈세, 불용액의 미국 재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한국이 군사건설사업을 선정하고 시공 및 설계감리도 한국이 해야 합니다. 일본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대는 주일

미군의 군사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설계 및 감리, 시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따라서 불법전용이나 이자수취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일본 국고로 회수됩니다.

7.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약속 없이 인건비 전액 부담 가능성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본문에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제5조)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9차 협정 본문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에서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한다’는 규정이어서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 문제는 미국의 선의에 다시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용 안정(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금지 등), 퇴직금 중간 정산제 폐지, 한국인 전용식당 설치, 주한미군 복지시설 한국인 노동자 이용권 보장 등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요구는 사실상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한미군사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75% 이상을 한국의 특별조치 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이행약정 3조 5항)고 규정하여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줄이고 그만큼 인건비로 돌려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급률을 확대(한국인 노동자 전체 인건비의 전액 또는 80~90% 지급)하기보다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늘리면서 동시에 인건비의 지급률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상한선 철폐는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전액 지불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할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2018년도 인건비에 배정된 방위비분

담금은 3710억 원입니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 8612명 전체 인건비 5716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인건비 전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현금이 2006억 원이 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이 인건비 전액 지불을 명분으로 한국에 2000억 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 수많은 삭감 요인이 무시되어 우리 국익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1) 연평균 1000~2000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

9차 특별협정 유효기간(2014~2018년)에는 매년 987~1905억 원에 이르는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필요한 금액보다 최소한 987억 원 이상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미집행금액을 고려하면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8년 9602억 원보다 최소 1000억 원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표2> 9차 특별협정 기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단위 :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방위비분담금	9200	9320	9441	9507	9602
미집행액(감액/이월금/불용액)	1905	1365	1139	1256	987

(2) 쓰지 않고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만 1조원 넘어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편성한데 따른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금액으로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남아도는 대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보더라도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기는커녕 대폭 증액된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입니다.

(3) 군사건설비는 최소 2000~3000억원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① 평택 미군기지이전 완료에 따른 삭감요인

2009~2017년 사이 매년 군사건설비에서 약 62%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건설사업)에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평택미군기지이전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군사건설비(2018년 4442억 원)에서 연 2000~3000억 원 정도 삭감 가능합니다.

②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1조원 가까이 이릅니다

설계지연이나 다년간 계속사업 등의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은(주한미군에게 현물로 인도되지 않은) 사업비가 2018년 말 현재 9864억 원에 이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19. 3. 20)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에 이릅니다.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설계·감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건설 일부만 진행되어 군사건설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로써, 한국 측이 현물을 미국 측에 아직 지급하지 못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국방부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수년간 진행되는 건설 사업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계속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라 조만간 해소된다는 입장”(한국일보, 2019. 3. 21)입니다.

그러나 설계지연 또는 다년간 계속사업 등 어떤 사유로든 1조원 가까운 현물지원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밀려있다는 것은 군사건설사업과 군수지원사업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건설비의 경우 누적된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9천억 원을 넘고 미집행현금도 288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군사건설비의 삭감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10차 협정은 미국의 일방적 이익챙기기 협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9. 10차 협정은 미국의 끝없는 탐욕에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핏하면 한국이 안보무임승차를 한다고 압박하지만 이는 적 반하장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자국의 국방예산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주한미군 인건비 포함)는 3.1조 원(27억 달러)이고 주한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주둔비는 1.1조 원(9.3억 달러)입니다. 반면 한국이 직접 및 간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5.5조 원(국방부 집계)입니다.

국방부 집계에는 누락되거나(미군탄약저장시설비) 저평가된 부분(임대료)이 있는 바, 이를 계산에 포함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6.4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로 보면 미국보다 무려 6배를, 총주둔비로 보더라도 미국보다 2배 이상 부담합니다.

이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실상은 “모든 부담을 미국이 져야 하는 건 부당하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2018. 12. 26.)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적반하장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희생양 삼아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10차 협정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몇 배의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를 훨씬 뛰어넘는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미국에 허용함으로써 트럼프의 끝없는 탐욕에 굴복한 협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9602억 원보다 무려 8.2%(787억 원)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증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한 우리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입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2월 10일)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리얼미터, 2019. 1. 25.)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58.7%가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를 반대하고 또 52%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압박하더라도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외교부 보도자료, 2019. 2. 10.)는 정부의 평가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 :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합니다

우선 10차 협정은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조항의 경우 방위비분담 금액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불법(위헌)을 범하고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협정입니다.

또 이번 10차 협정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사항들 가운데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이자소득 총액반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사드운영유지비는 한국이 부담하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국회가 군사건설비의 불용액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이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10차 협정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10차 협정은 방위비분담금의 적용 대상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이나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 10차 협정은 공공요금 및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비용을 신설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또한 10차 협정은 막대한 액수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요금 및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비용을 신설하고 인건비의 상한선을 철폐하여 인건비 전액부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10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과 횡포 그리고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굴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10차 협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횡포와 탐욕에 바탕한 트럼프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0차 협정 가서명 이틀 뒤 트럼프가 “전화 몇 통화에 5억 달러 더 냈다”(중앙일보, 2019. 2. 13.)면서 “(방위비분담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야 하고 오를 것”이라고 호언한 것을 보면 트럼프가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여기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0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종적 태도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마저 트럼프의 볼모로 잡혀 앞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횡포를 더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단호한 거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시종 수세적 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굴종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국회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끝)